

# SmartWhistle

## 윤리경영 Newsletter 2016년 10월호

### 1. 최근 동향 및 소식

- 김영란법 첫 위반자는 고작 '피라미(?)'
- 가스기술공사, 청탁금지법 실천 결의
- KEIT, “부정청탁 NO!” ... ‘부정청탁금지 실천결의 및 교육’ 실시
- NS홈쇼핑, 협력사 상생 ‘NS윤리위원회’ 발족 1주년
- 권익위 고무줄 유권해석에 여전한 김영란법 혼란

###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삼성화재 - 준법보안담당자를 활용한 윤리경영

### 3. 청렴 위반 사례

- 병원의 접수 순서 부정청탁
- 단속 결과 목인 부정청탁

### 4. 지식마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Part2

### 5. Quiz

###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 최근 동향 및 소식

### 1. 김영란법 첫 위반자는 고작 '피라미(?)'

23일 박주민의원과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법사회학회의 주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발표자로 나선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김영란법은 근본인식과 설계에 있어 세련되지 못한, 개선의 여지가 아주 많은 미완의 법”이라고 단언했다.

최 박사는 특히 이 법이 저인망식 규제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애초 벤츠 여검사나 스폰서 검사에 대한 처벌 요구로 시작했던 김영란법은 구조적 부패가 아니라 사소한 부패를 규율하는 법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규율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적용대상 기관은 40,919개인데 이 중 학교와 언론사가 96.8%를 차지한다. 최 박사는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는 저인망 규제방식을 채택한 결과 김영란법의 첫 위반자는 국민들 생각처럼 행정부나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아니라 교사나 언론인 혹은 소규모 공공기관의 하위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김두열 한국법경제학회 부회장은 “김영란법의 취지에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법이 매우 잘못 만들어져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하면 부정청탁과 비리를 없애지 말자는 이야기냐고 상대방이 대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영란법 저촉 사례가 꽤 발생하겠지만 이런 것도 법으로 잡아야 하나 싶은 사건들이 주로 적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http://www.nacil.com/news\\_view/?id\\_art=210866](http://www.nacil.com/news_view/?id_art=210866)

### 2. 가스기술공사, 청탁금지법 실천 결의

한국가스기술공사가 5일 대전 본사 강당에서 청탁금지법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28일부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다지고 전사적인 준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청탁금지법 관련 전문가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을 초청해 청탁금지법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사적인 준수로 윤리적이고 깨끗한 기관이 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교육 후에는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청탁금지법 실천을 다짐하기 위한 결의문에 대한 선서를 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석순 가스기술공사 사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우리 공사가 보다 더 투명해져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사가 돼야 한다.”며 “이 행사를 계기로 윤리적이고 청렴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청탁금지법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37053>

## 최근 동향 및 소식

### 3. KEIT, “부정청탁 NO!” ... ‘부정 청탁금지 실천결의 및 교육’ 실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5일 대구시 본원에서 ‘부정청탁금지 실천 결의대회 및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결의 대회에서는 성시현 원장 등 전 직원이 ‘청탁 금지법 청렴실천결의 및 서약서’를 제출했다. 이날 특강에는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둔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적용 범위 등을 설명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906001001>

### 4. NS홈쇼핑, 협력사 상생 ‘NS윤리위원회’ 발족 1주년

NS홈쇼핑은 지난 22일 경기도 성남 판교사옥에서 NS윤리위원회 발족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숙경 NS홈쇼핑 감사실장은 “지난 1년 동안 회사 밖의 시선으로 NS홈쇼핑의 윤리경영과 법규준수, 협력사와의 상생활동에 대한 자문을 통해 동반성장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NS홈쇼핑은 NS윤리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동반성장협력 대출금 200억 운용’, ‘외상 담보 대출 1412억 지원’, ‘대금 지급일 단축’, ‘프로그램 제작 비용 지원’, ‘중소기업 해외 판매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 상생활동을 실시했다.

<http://www.ebn.co.kr/news/view/852133>

### 5. 권익위 고무줄 유권해석에 여전한 김영란법 혼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7일로 전면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법 적용 대상자들은 물론 상당 수 국민들이 김영란법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잣대인 ‘직무 관련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듣기 위해 목을 빼고 정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를 쳐다보고 있지만 권익위 측의 업무 폭주로 답변이 더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익위는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괴리가 큰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고무줄’ 해석을 내리거나 유권해석 자체를 바꿔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타 공직자들이 업무관련성에 대해 국정감사 등 직무관련성이 부각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업무수행 차원에서 가액기준(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교직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언제든 차 한 잔 조차 견네지 못하도록 해석한 것이다. 반면 당초 권익위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확인했던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겸임교수 등은 권익위 해석이 바뀌면서 빠졌다. 이들이 여타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출결사항을 관리하고 시험을 출제해 학점을 부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법의 형평성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 기관 관계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고 푸념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675236&year=2016>

## 윤리경영 실천 사례

### 삼성화재 - 준법보안담당자를 활용한 윤리경영

#### 1. 현재 추진중인 윤리경영 프로그램 개요

삼성화재는 회사의 미션인 ‘정도경영을 통하여 고객의 사랑과 사회의 신뢰를 받는 초일류 보험회사’를 위해 다양한 윤리경영 프로그램 체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체계는 다음과 같다.



윤리경영을 위하여 삼성화재는 기업만의 경영원칙 및 행동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경영원칙이란 헌법과 같은 개념이며, 경영원칙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 2. 깨끗한 조직문화를 유지한다. 3. 고객, 주주, 종업원을 존중한다. 4. 환경, 안전, 건강을 중시한다. 5.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 5가지 경영원칙에 대한 행동지침으로는 거래업체와의 관계, 회사공금 및 자산 관련, 근무기강 관련, 정보 및 인력 유출 관련, 기타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경영원칙에서 정한 임직원의 사고와 행동기준이 된 사항과 그 실천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었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는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교육대상에 따라 연 1회~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임직원에게 윤리준법 서약 및 자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모집조직의 정도영업 자기점검 실시, 준법보안담당자를 통한 현장 상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상, 임원 준법지수 평가, 내부신고 제도 운영,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각종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실시 및 추진하고 있다.

#### 2. 핵심 추진사항에 대한 소개

삼성화재는 보다 효과적인 윤리경영을 위해 준법보안담당자 활용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서별 준법활동 담당자 양성 배경으로는 준법감시 전담인력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준법감시파트 전담인력 13명으로는 1인당 2,152명을 관리하지만, 준법보안담당자 227명을 포함했을 시에는 1인당 116명을 관리한다. 이와 함께, 각 부서의 특성에 따른 자체점검과 준법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현장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기능이 살아나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윤리경영이 가능하다.

\*내부통제기준 제16조(준법감시담당자),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제10조(보조기구)에 의해 준법감시인을 보좌하여 각 부서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부서별 두고 있음.

##### ▶준법보안담당자 개요

구분	준법보안담당자
체계 단위	• 팀/부서별 편제 총 227명
인원 구성	• 책임급 이상 간부(현장부서는 대리급 이상 직원)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의 보안 및 준법 여부 감시 활동</li> <li>• 완전판매, 개인정보, 자금세탁방지 등 Compliance 교육 실시</li> <li>• 부서 준법활동 결과 보고(월 정기보고서 양식)</li> <li>• 내부통제 관련 정보사항 공유</li> </ul>
운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부/본부단위 보안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부/사업부 자체 준법보안 점검 실시</li> <li>- 준법보안 이벤트 참여 지원</li> </ul> </li> <li>• 부서별 보안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 자체점검 및 현장 준법보안교육 활동 (준법보안 관리대장 內 부서점검 및 교육현황 기재)</li> <li>- Compliance 점검 실시 및 실적 등재</li> <li>- BP(Best Practice) 활동사례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법지원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현황, 평가 관리</li> </ul> </li> </ul> </li> <li>• 소통 및 정보공유를 위한 “사이버 준법활동 Cop”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법관련 정보사항 실시간 공유</li> <li>- 업무매뉴얼, 점검 체크리스트 등재</li> <li>- 일정, 우수 활동자 시상 등 공지사항 안내</li> </ul> </li> <li>• 준법보안 담당자 워크샵 실시(年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법활동 우수사례 발표, 주요현안 공유 등</li> </ul> </li> </ul>
활동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평가 반영</li> <li>• 우수활동자 시상 및 인사가점 부여</li> </ul>



## 윤리경영 실천 사례

2015년 상반기, 준법보안담당자 현장 Compliance 교육은 총 1,316회에 걸쳐 26,633명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총 608건의 윤리경영 우수활동사례를 발굴했다. 또한, 총 1,334건의 제안 및 정보사항이 등록, 공유되었으며 총 2개 차수의 준법보안담당자 워크샵에서 210명이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료하였다.

[준법지원 시스템]을 통한 Compliance 업무관리는 준법보안담당자 활동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서, 이를 통해 산재되어 있는 각종 점검, 교육, 활동사례 항목별로 유형을 구분·관리하는 한편, 현장 부서별 Compliance 자체 점검 및 결재·합의 등 기능 전산화로 누락/오류 등 Compliance 위반 Risk 선제관리 강화가 가능하다. 준법보안담당자 활동의 다른 우수 사례로는 부서별 선제적·체계적인 내부통제활동을 위한 업무체계 확립, 원격지 보안상태 상시 관리로 정보보안 생활화 기여, 고객정보보호 생활화로 無민원·無VOC 실천, 내실 있는 준법교육 실시를 통한 보안의식 강화, 준법보안담당자 표식을 통한 역할 및 책임의식 고취 등이 꼽힌다. 준법보안담당자 활동 우수사례 시상으로는 창립기념일 표창 및 우수자 표창 등이 있다.

### 3. 핵심 추진사항 도입결과 획득한 성과

1. 우수사례 육성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해 현장의 준법활동 활성화  
2015년 2분기에 부동산 파트와 제휴영업부가 우수 사례 표창을 받았다. 부동산 파트는 준법활동 생활화로 1년간 무결점 담당자로 업무 수행 및 매월 2건 이상의 우수사례를 공유 및 전파하였으며, 제휴영업부는 상시 보안 및 완전판매 교육 프로세스 구축 및 신속한 고객응대로 고객만족을 제고하였다.
2. 전사 차원의 준법문화 정착  
삼성화재는 준법보안담당자를 활용하여 Bottom-up 방식으로 윤리경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윤리문화 확산을 독려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현장부서의

모든 경영활동과 연계된 준법문화 구축과 준법감시 파트의 컨트롤 타워 선진화로 인한 컨설팅을 중심으로 한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이 있다.

3. 조직투명성 및 내부통제 활성화 체계 운영  
삼성화재는 윤리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윤리경영을 통한 위기관리능력·지속가능경영, 이해관계자의 관계개선을 통한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Global Standard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대외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국내기업 중 최고수준과 금감원 민원발생 평가 1등급(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

### 4. 향후 도입 예정 프로그램

삼성화재는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식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내외적으로 윤리경영, 정도영업, 부정근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마인드를 심어줌으로써 청렴한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한 취지로 시행될 프로그램이다. 윤리경영 핸드북 개정 및 발간, 사내 미디어를 통한 임직원 윤리경영 기획방송, 전사적 윤리경영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에 대한 세부 계획으로는 1. ‘윤리경영 핸드북’ 발간 및 배포 - '03년 최초 발간했던 임직원 배포용 윤리경영 핸드북 개정 발간 (「삼성화재 경영원칙 행동지침」개정('15.8.1) 사항 등 반영), 개정 핸드북 전사 배포 및 요약내용 스크린보드 등에 게시 2. 임직원 윤리경영 기획방송 제작 - 추석 명절 전 ‘임직원간 선물 안주고 안받기’ 안내 및 임직원 경영원칙 행동지침 등 공유 3. 전사적 윤리경영 캠페인 실시 - 업무지침, 프로세스 상 윤리경영 실천사례 발굴 및 개선 Idea 공모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실천 모범사례”, 2015,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 청렴 위반 사례

### 1 병원의 접수 순서 부정청탁

A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을 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 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무과장 C는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시사점 :

- ① 국립대학교병원의 입원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국립대학교병원은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학교) 소속기관으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음
- ②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
  -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임
- ③ 대기자 A는 제3자인 친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친구 B는 제3자인 대기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④ 원무과장 C는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해당 병원에 대기자 A가 우선하여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2 단속결과 묵인 부정청탁

◇◇ 파출소 순경 B는 관할 지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운전중이던 A에 대해 호흡기 측정기를 하자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8%로 측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10년 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는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적발 사실을 눈감아 달라고 부탁했고 B가 이를 묵인한 경우

시사점 :

- ①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명(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3호)
- ②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단속 결과에 따른 적발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
- ③ 음주운전자 A는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상 이해당사자가 직접 하는 부정청탁은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금지 대상에는 해당함
  -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로 인한 법적 이익이나 효과가 이해당사자인 음주운전자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직접 청탁에 해당
- ④ 순경 B가 음주운전자 A의 부정청탁에 따라 적발 사실을 묵인해 주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식마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Part2

스마트위슬 윤리경영 뉴시레터 9월호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을 소개하고 그 제정 배경과 제정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번 10월호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1. 법률 적용 대상

##### 1) 적용 대상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 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포함
-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 사업자, 신문 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인터넷신문 사업자)
  - ※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제12호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의미 (정보간행물 또는 전자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제외)

※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제12호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 2) 적용 대상자

-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제72조),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공중보건 의사(농어촌 의료법 제3조),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제5조) 등
  - 경력직 공무원(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이 있음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인 이상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임원(이사 감사)은 상임 비상임을 포함하고, 공직유관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수행 직무를 불문하고 그 직원에 해당
- (공적 업무 종사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는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함

## 지식마당

- 직원은 근로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 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
  - 공적 업무 종사자의 업무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적 업무'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
  -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
-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를 금지
  - (공무수행사인)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도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 하 여서만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을 적용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공무수행사인의 유형에 따라 상이
  - (일반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일반인
    - ※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상 일반인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
    - 법인 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 단체도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제재 대상

[참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현황 ('16. 9 현재)

적용 대상 기관		기관수
<b>(가목)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b>		<b>317</b>
단위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위, 감사원, 인권위 등	6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및 개별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51
지방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243
교육청	시도 교육청	17
<b>(나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 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b>		<b>982</b>
<b>(다목)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21개 중 319개는 공직유관단체와 중복)</b>		<b>2</b>
<b>(라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3개 학교 및 1개 학교법인은 공직유관단체와 중복)</b>		<b>22,408</b>
학교	유치원, 초·중·고·기타, 대학	21,198
학교법인	유치원, 초·중·고·기타, 대학	1,210
<b>(마목)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b>		<b>17,210</b>
방송사업자	지상파, 종합유선,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20
신문사업자	일반일간, 특수일간, 일반주간, 특수주간사업자	3,400
잡지등 정기간행물사업자	잡지 및 기타 간행물	7,320
뉴스통신사업자		21
인터넷신문사업자		6,149
<b>전체 대상 기관 합계</b>		<b>40,919</b>

출처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index.html>

국민권익위원회



## Quiz

1. 다음 중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이 아닌 곳은?
  - ① 방송사업자
  - ② 중앙행정기관
  - ③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 ④ 국내 10대 대기업
  
2. 다음 중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풍속영업, 식품·위생, 환경, 도로교통 분야에서의 단속 등
  - ② 법령 준수 또는 위반행위의 확인, 정책결정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 등
  - ③ 국회·감사원·행정기관 등의 감사 등
  - ④ 수사·재판·심판 등과 관련되거나 이와 유사한 준사법적인 각종 결정 등
  
3. 다음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 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② 「공직자윤리법」 제3조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③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
  - ④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4. 다음 중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하여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는?
  - 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②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③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④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④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2. 답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합법적인 부패활동의 영역을 정의하지는 않았다.
3. 답 ② 청탁금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간 금품·향응 제한 금액은 300만원이다.
4. 답 ① 청탁금지법에서는 형벌, 과태료 규정 신설 규정을 통하여 기존 법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 관련 행사

### 1. 성영훈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 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당위성과 정당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당장은 어색할 수 있지만 차츰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버스 안에서 담배피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도 있었고, 금융실명제 시행 때도 아우성이 났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준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의식에 내재화돼 행동하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92109283489102>

### 2. 부산상의,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열어

지난 20일,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시, (사)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공동으로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를 개최했다.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FPC)은 전세계 24개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 중 한국기업의 준법·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민간협력 프로그램이다.



세미나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반부패 국제동향’, ‘청탁금지법 소개 및 국내기업 대응방안’, ‘공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글로벌 반부패 가이드라인’ 등 준법윤리경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24/2016082403925.html?OutUrl=naver>

### 3. aT, ‘CS·윤리경영 워크숍’ 진행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8일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CS 윤리경영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워크숍 프로그램으로는 ‘CSI기반, 일하는 방식 혁신 특강’과 ‘주요 사업별 고객의 소리(VOC)분석 및 개선사항 발표’ 등이 이어졌으며, 청탁금지법에 대비한 내부 특강과 OX퀴즈, 윤리 송편 빚기 등 윤리마인드 내재화를 위한 특별활동도 진행됐다. aT 관계자는 “고객과 국민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일하는 방식 혁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74062>

##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